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情報公開システム（www.open.go.kr）からの請求も可能です。

※申請人(代理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0条第1項および同法施行令第6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情報の開示を請求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청구인
請求人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押印)

(접수 기관의 장) 귀하
(受付機関の長) 殿

접 수 증

受 付 証

접수번호 受付番号	청구인 성명 請求者の氏名
접수부서 受付部署	접수자 성명 受付人の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または押印)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貴下の請求書は、上記の通り受付いたしました。

년 월 일
年 月 日

접 수 기 관 장 직인
受 付 機 関 長 職 印

유 의 사 항
留 意 事 項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 開示請求された開示対象情報の全部または一部が第三者に関連すると認められる場合は、「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1条第3項に基づき、請求の事実が第三者に通知されます。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情報開示を請求した日から20日が経過しても情報開示の決定が行われない場合は、「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8条から第20条までの規定に基づき、当該公共機関に異議申し立てをするか、行政審判（書面またはオンライン：www.simpan.go.kr）、または行政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請求者は、情報公開システムおよびその他システムとの連携により通知された文書を対外的に活用するために必要な場合、職印捺印の補完を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
-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本人確認が必要な情報を請求する場合は、「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10条第1項第2号に基づき、公共機関が請求者の住民登録番号の提出を追加で求める場合があります。